

2024년도 「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」 공고문

(2024년 1차 : 시행일 2024. 3. 25)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 : 고효율 냉(난)방기·세탁기·건조기·냉장고 구매 지원으로
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
- 사업예산 : 750억 원 (※ 예산 소진 시 '24년 사업 조기 종료)
- 신청기간 : '24. 3. 25 (월) ~ '24. 12. 31 (화)
 - '24.1.1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

2. 지원 기준

- 지원대상 : '소상공인기본법' 제2조와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제2항
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

▶ 구역전기사업 지역*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

* 지역난방공사(가락한라APT·상암2지구·공양삼송지구·동남권유통단지), 대성산업(신도림
디큐브씨티), 삼천리(광명역세권지구), 부산정관에너지(부산정관지구), 대성에너지
(대구죽곡지구), 씨엔씨티에너지(대전학하지구), 제이비(천안청수지구·아산탕정지구)

- 지원기기 : 에너지효율1등급 냉(난)방기·세탁기·건조기·냉장고 신품
(냉장고는 상업용·일반용 모두 가능)
 -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구매 시만 지원
 - 지원기기인 냉(난)방기·세탁기·건조기·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
각 제조사·판매점으로 문의
 - ※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
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

- ▶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
- ▶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, 냉(난)방기·세탁기·건조기·냉장고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 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

□ 지원 제외

-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
 - 단, 해당 장소에 외부인(고객)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* 제출시는 지원 가능
 - * 방명록, 입출입기록, 수업시간표, 고객응대 사진, 고객 방문 확인증 등
-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%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
- '24. 1. 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
 - '24. 1. 1 이후 구매했다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

□ 필수 증빙서류

- ①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, ②기기 명판, ③에너지효율등급 라벨, ④전경 사진, ⑤구매 증빙 ⑥사업자등록증

- 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'중소기업 확인서(소상공인)'로서,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
 - 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https://sminfo.mss.go.kr>) “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”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(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)
- ② 구매한 신규 기기의 모델명,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
- ③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
- ④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
 - * 사진촬영 어플(예시 : SpotLens, Timestamp Camera Basic 등)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
 - *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,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
- ⑤-1 구매계약서, 거래내역서 中 1부
- ⑤-2 세금계산서(영수만 인정)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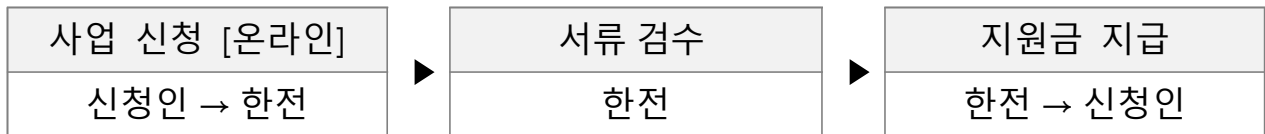
□ 지원금

지원 기기	지원금	지원 한도
냉(난)방기	구매가격(부가세 제외)의 40%	사업자당 160만 원
냉장고		사업자당 160만 원
세탁기		사업자당 80만 원
건조기		사업자당 80만 원

-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,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
예) 구매가격이 200만 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원 세탁기 3대 구매 시,
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(냉방기 160만원 + 세탁기 80만원)
-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

3.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

□ 사업절차



- 지원금 지급 전·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
※ (부정수급 주요사례) ①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, ②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, ③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등

□ 신청방법 :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

- 홈페이지 : <https://en-ter.co.kr/ac/main/main.do>(3.25일 오픈예정)

4. 부정 청구 등의 조치

- 조치 대상 : ‘공공재정환수법’ 제2조 제6항에 의한 ‘부정 청구 등’
- 조치 사항 :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, 부정 이익의 환수, 제재부가금의 부과·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

부정 청구 유형	부정 이익	제재부가금
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	지급된 지원금 전체	부정 이익 × 500%
지원금 과다 청구	과다 지급된 지원금	부정 이익 × 300%
지원금 오 지급	잘못 지급된 지원금	-

※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, 제8조,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제5조 준용

- 명단 공표 : ‘공공재정환수법’ 제16조에 의거,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 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,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

5. 기타 사항

- 입시 문의처 : 061-345-1550~4 (“24.2.26~3.22, 평일 09시 ~ 18시)
 - 현재는 사업시행일 이전으로 공고상의 간단한 내용만 응대 가능
 - 지원사업 신청방법,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일인 3.25일 이후에 응대 가능(실제 담당자 연락처는 추후 공지 예정)
- 기기 정보(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)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(<http://eep.energy.or.kr>)에서 확인 가능
 -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
- '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'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(지원한도는 '23년 지원금과 무관)